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24
----------	-------

발의연월일 : 2026. 6. 12.

발 의 자 : 노종면 · 박선원 · 서영석  
문금주 · 서삼석 · 윤종균  
박용갑 · 이해식 · 이건태  
양부남 · 강준현 · 모경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과정이 포함되는 것에 반해, 종합계획을 수정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비 지원 대상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개발 사업의 연계성이 높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가 환경 변화에 맞춰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토지 매입비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 자금 투입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수립”을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수립”을 “수립(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재수립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사회·경제상황 또는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는 제1항·제2항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공여구역내의”를 “반환공여구역내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내의”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종합계획의 <u>수립</u>) ① · ② (생 략) <u>&lt;신 설&gt;</u></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u>수립</u>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 할 수 있다.</p> <p>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 구역 등 활용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 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 고자 하는 <u>반환공여구역내의</u> 국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p>	<p>제7조(종합계획의 <u>수립 등</u>)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도지사는 사회·경제상 황 또는 환경 변화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 우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는 제1항·제2항 및 제8조를 준용 한다.</u></p> <p>④ ----- -----<u>수립</u> <u>(제3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재</u> <u>수립을 포함한다)</u>----- ----- -----.</p> <p>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 구역 등 활용 지원) ① ----- ----- ----- -----<u>반환공여구역내</u> <u>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내</u> <u>의</u>----- -----</p>

<p>입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② ~ ④ (생략)</p>	<p>----- -----.</p> <p>1.·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